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2. 20 선고 2021가단12635(본소), 2022가단3409(반소) 판결
[공사대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B

피고(반소원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일

변론 종결2023. 11. 22.

판결 선고2023. 12. 2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1.부터 2023.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 D)는 2018. 9. 20. 피고로부터 안성시 E 다가구주택 1개동 신축공사 중 미장·조적·건출·방수공사를 25,000,000원¹⁾에, 같은 날 주식회사 F(그 대표이사 G는 2020. 1. 17.부터 피고의 이사를 겸직하였다, 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H 외 5필지 다가구주택 3개동 신축공사 중 미장·조적·건출·방수공사를 61,000,000원에 각 하도급받아 모두 완료하였다(위 각 하도급공사를 통틀어 이하 'I리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12.경 피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J빌라 재건축신축공사 중 미장·방수·우레탄·기포·방통·재치장콘크리트·건출공사(이하 'J빌라 공사'라 한다)를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10, 12,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I리 공사대금 청구부분

원고는, 피고로부터 I리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G가 I리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총 공사대금 86,000,000원(= 25,000,000원 + 61,000,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6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I리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 K(F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이 2019. 2. 8. 원고에게 '피고가 2019. 2. 28.까지 I리

공사대금 잔금 37,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대금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I리 공사 중 다가구주택 3개동의 미장조적건출방수공사는 피고가 아닌 F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원고는 F은 형식상의 하도급인일 뿐 실제 하도급인은 피고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2), G가 원고에게 I리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2, 4, 11,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금지불각서상의 공사대금 잔금 37,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21가단6531)을 제기하고, 같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이 법원 2021카단551)을 받았다가, 2021. 8. 11.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소송 및 가압류신청을 모두 취하하였는데, 당시 G가 피고의 이사 자격으로 원고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갑 제2호증)에는 "공사잔금 37,000,000원 중 금 일천오백만원을 금일 C(주)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K에게 받는데 협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설령 K이 작성한 위 대금지불각서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후 피고를 대표 또는 대리한 G와 사이에 위 대금지불각서상의 공사대금 잔금 37,000,000원 중 15,000,000원만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는 K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대금지불각서상의 공사대금 잔금 37,000,00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J빌라 공사대금 청구부분

원고가 피고로부터 J빌라 공사를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완료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14, 15, 24, 25호증의 각 기재3), 증인 L의 증언,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사 외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지상1층 담장공사 등을 추가로 시공하였고, 추가로 시공된 부분의 객관적인 공사비는 50,871,378원 정도인 사실, 피고의 현장소장 L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추가공사대금을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의하고 G에게 이를 보고한 사실, 원고는 2021. 1. 7.부터 2021. 7. 29.까지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 4장을 발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J빌라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총 77,000,000원[= 원래 공사대금 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가공사대금 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그 중 50,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26,400,000원(= 77,000,000원 - 50,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I리 공사대금 잔금 22,000,000원을 F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데, F로부터 2018. 11. 15. 2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를 기망하여 2021. 8. 11.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이중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위 1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15,000,000원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강종선

1) 공사계약서(갑 제9호증)에는 공사대금이 2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대금이 25,0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다가구주택 1개동 미장조적건축방수공사대금

25,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갑 제3호증(공사대금확인서)은 작성자인 L이 작성일 이전에 피고의 현장소장직을 퇴직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의 현장소장(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